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22-69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
- 제2022-6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
- 제2022-7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입법예고 14

● 고 시

- 제2022-8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43
- 제2022-9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4
- 제2022-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45
- 제2022-92호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 고시 48

● 공 고

- 제2022-688호 : 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부 위촉직 위원 모집공고 5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93호

이 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등록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
-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이에 준한 공공서비스 감면 혜택 부여

2.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684, FAX : 3396-8613, E-mail : kds041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첨 부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61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시설내”를 “문화·체육시설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타시·구민”을 “타 시·구민”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의10%”를 “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1~4일전”을 각각 “1~4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후단 중 “100분의15”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80범위”를 “80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제12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제4항 중 “제11조 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제12조제5항 중 “20범위내”를 “20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7조·제2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61조----- ----- ----- ----- ----- -----.</p>
<p>제4조(관리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관리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범위----- -----.</p>
<p>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략)</p> <p>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p> <p>⑤ (생략)</p>	<p>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문화·체육시설√내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운영지원) ① ----- ----- ----- 범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문화·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p>	<p>제9조(문화·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p>

현 행	개 정 안
<p>가. (생 략)</p> <p>나. <u>사용예정일 1~4일전</u> : 위약금 공제 후 반환</p> <p>다. (생 략)</p> <p>4.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p> <p>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1~4일전^{✓전} -----</p> <p>다.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100분의15^{✓15}----- ----- . ----- ----- ----- ----- ----- ----- ----- .</p> <p>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80범위^{✓범위}----- .</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현 행	개 정 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u>√제8조의3</u> -----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52조제1항</u>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58조에</u>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17조의2제1항</u> -----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u>√제2조제5호</u> ----- -----
<신 설>	9.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 12. (생략)	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중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 제11조제2항----- -----.
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 ----- 20 [√] 범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한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98호

이 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

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의무

- 민원담당공무원 소속 부서장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다.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의 예방과 치유 지원

-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비,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안전시설·장비 확충, 안전요원 배치 및 홍보 방안 마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중복 지원 불가) 등

라.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 제출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민원여권과, 전화 : 02-3396-4754, 팩스 : 02-3396-8648, email : kbm492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원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 의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 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 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
-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 상담	제5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의료비	제5조제2호	1인당 연간 1,000만원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5조제3호	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법률 상담	제5조제4호	상담 연계	
소송 지원	제5조제4호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배치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제1항 및 제2항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지원 신청 내용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중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01호

이 훈령(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방·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3)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 확대 (안 제2조)
-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추가 (안 제4조, 제7~9조)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위원 확대 (안 제17조)
- 라. 안전·보건교육 추가 (안 제23~32조)
- 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가 변경 (안 제33~43조)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나. 연 락 처 : 전화 02-3396-4484, 팩스 02-3396-8850

다. 전자우편 : aser0411@junggu.seoul.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마.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훈령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구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임·직원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의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구청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및 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구청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2.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항제1호의 노동자
 -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3. 산안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5. "중대산업재해"란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처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6.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한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안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일정 사업기간 내(1년 이상인 경우 1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기간을 말함)의 근로자 연인원수(1년 이내인 경우 전체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7.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8.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종사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1.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1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1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14.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1) 성과개선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여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 2)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구청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
 - 3) 안전보건정책의 사회적 흐름 및 구청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
 - 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등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제5조(구청장 등의 의무) 구청장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며,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시 안전 및 보건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 3. 관계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7.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8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도급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해당 작업 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
-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은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사업시 수급인 등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노동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대표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10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과 담당조직으로 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한다.

- ② 구청을 총괄·관리하는 구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담당조직을 구성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선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구청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다.

-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직책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구청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④ 사업장의 조직계통상 최고 의사결정자인 구청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구청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안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관리감독자) ①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소속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 ② 구청장은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청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노동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가. 안전관리자
- 나. 보건관리자
- 다.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관리자) ① 구청장은 이 규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산안법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4와 같다.

⑥ 구청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임명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건관리자) ① 구청장은 이 규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7.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2. 산업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법 시행령 별표6과 같다.
- ⑥ 구청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임명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보건)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2. 노동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이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산업보건직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구청장은 산업보건직을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노동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노동자 대표(산안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절차로 선출된 자)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3. 노동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10명 이내)의 노동자
-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사용자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산업보건직
 -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6명 이내(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10명 이내)의 구청 각 부서의 장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해촉) ① 노동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 또는 선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2.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출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3. 노동자 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3.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산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및 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노동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노·사 동수인 경우에는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각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종사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⑦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전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게시판 및 그 밖의 전체 노동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⑨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 대표가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중구청장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구청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및 그 밖에 안전점검 참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구청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구청 감독 참여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노동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노동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1. 지게차,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 ② 구청장은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3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은 구청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④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4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구청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제25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구청장은 신규로 채용된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8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26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구청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노동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노동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이 규정 제25조제2항과 같다.

제27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25조(신규채용 시 교육), 제26조(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하는 경우
 -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품명(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3.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9조(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안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교육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 34시간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① 구청장은 산안법 제7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에게 작업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자.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차.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카.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 파.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하.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2.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라목에 따른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교육결과 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33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구청장은 산업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②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청이 대여하는 경우
 - 가.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나. 해당 기계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1)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2)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다. 설치·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1) 설치·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2) 설치·해체업자에게 나목의 각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 3)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라. 해당 기계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호 제1목 및 제3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2. 구청이 대여 받는 경우

가. 구청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기계등을 대여 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5조(전기설비 안전) ① 구청장은 청장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청장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합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2.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
3.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 ④ 노동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구청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법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① 구청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② 구청장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8조(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노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노동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기준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②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작업중지) ① 구청장 및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등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 결과 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노동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구청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경고·지시·안내·금지 또는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44조(건강진단)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2. 특수건강진단
- 3. 배치 전 건강진단
- 4. 수시건강진단
- 5. 임시건강진단

- ② 노동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구청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작업환경측정) ① 구청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

시할 것. 이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 상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② 구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노동자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 ② 해당 부서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부서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노동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해당 노동자는 구청에서 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노동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구청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구청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제3조 별표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노동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상기 별표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시)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해당 작업장 내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구청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52조(밀폐공간 작업) ① 구청장은 밀폐공간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밀폐공간에는 관계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기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구청장은 산안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4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산업재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5조(산업재해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동

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④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56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7조(산업재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구청장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산업재해 사고기록·관리)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노동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장 위험성평가

제59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노동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 ③ 구청장은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목적, 방법, 조직의 역할과 책임(권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60조(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노동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체적인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노동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61조(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구청장은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2조(위험성평가 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63조(제안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64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② 포상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65조(징계) ① 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66조(안전·보건 문서 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산안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3.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② 단,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7조(규정 작성·변경절차)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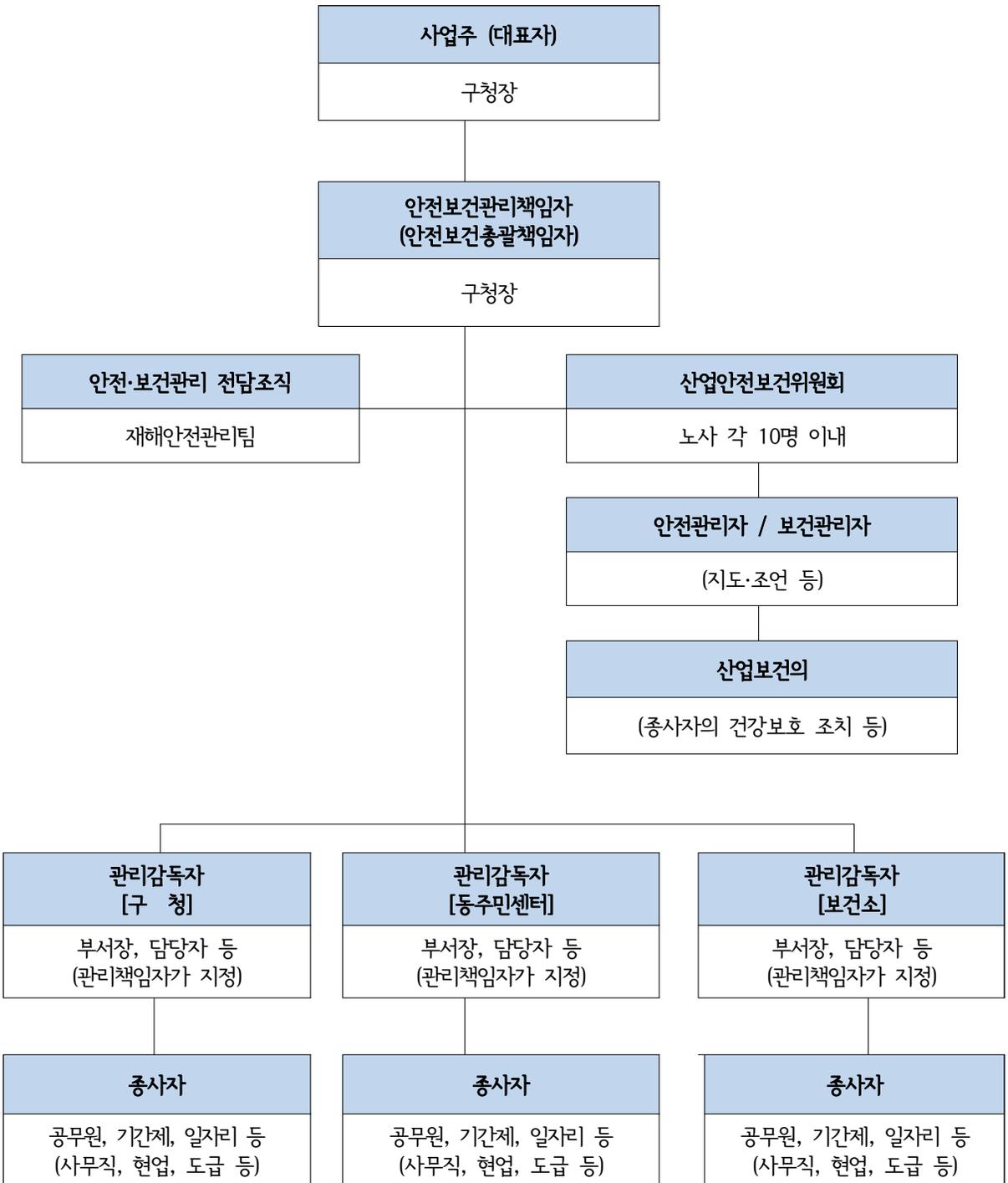
제68조(규정 준수 등) ① 구청장 및 노동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이 규정을 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이 규정은 구청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구청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8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568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4길 48	2022. 10. 5.	신청에 따라 청구로1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1. 3. 2.	옛 지역 명칭인용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9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27	2022.10.5.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91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의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우리 구 주민과 통행하는 모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내용 (2개소)

1) 케이지타워 주변 도로 금연구역

- 금연구역 명칭: 케이지타워 주변 도로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순화동)
-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제31호
- 지정 장소 및 범위: 아래 그림(녹색선으로 표시), 연장길이 108m



2) 세종로파출소 및 동화면세점 주변 금연구역

- 금연구역 명칭: 세종로파출소 및 동화면세점 주변
-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 (태평로1가) 및 세종대로 135 ~ 세종대로21길 67 (동화면세점(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49) 앞 도로 포함)
-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거리 제35호
- 지정 장소 및 범위: 면적 1,000㎡ 및 연장길이 223m
- 아래 그림(녹색선 및 보라색선으로 둘러싸인 면으로 표시)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2년 10월 1일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1. 10. 2. ~ 2022. 11. 30.
- 과태료 부과일(개시일): 2022. 12.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고시방법:** 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사업 담당(☎02-3396-567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

금번 지정되는 “케이지타워 주변 도로 금연구역”은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 금연구역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구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전체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92호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승인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결산개요

- ▶ 예산현액 653,441,632,443원(전년도이월금 23,730,678,443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647,475,333,578원이고
지출액은 536,751,213,882원이며
- ▶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0,724,119,696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결산상 잉여금 110,724,119,69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081,700,083원
 - 사고이월 13,010,547,05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 7,668,983,0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962,889,557원이다.

2.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

가. 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다음도이행) (D=B-C)	다음연도 이월내역			
					명시 이월액 (E)	사고 이월액 (F)	보조금 반납금 (G)	순세계 잉여금 (H)=D-E-F-G
총계	653,441,632,443	647,475,333,578	536,751,213,882	110,724,119,696	19,081,700,083	13,010,547,050	7,668,983,006	70,962,889,557
일반 회계	599,683,202,333	593,056,873,367	520,380,149,485	72,676,723,882	19,081,700,083	11,707,416,070	7,413,216,446	34,474,391,283
특별 회계	53,758,430,110	54,418,460,211	16,371,064,397	38,047,395,814		1,303,130,980	255,766,560	36,488,498,274
의료 급여 기금	343,856,000	374,035,840	339,096,340	34,939,500			4,759,060	30,180,440
주차 장	52,022,242,110	52,874,759,228	14,869,630,337	38,005,128,891		1,303,130,980	251,007,500	36,450,990,411
가산 시설	1,392,332,000	1,169,665,143	1,162,337,720	7,327,423				7,327,423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입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77,129,801,000	599,683,202,333	640,057,600,867	593,056,873,367	41,853,209,960
지방세수입	189,000,082,000	189,000,082,000	193,053,203,250	189,086,997,090	3,628,634,750
지방세	189,000,082,000	189,000,082,000	193,053,203,250	189,086,997,090	3,628,634,750
세의수입	78,151,774,000	78,151,774,000	115,515,161,890	72,480,640,550	38,224,575,210
경상적세의수입	62,578,871,000	62,578,871,000	54,321,044,290	54,177,370,180	143,674,110
임시적세의수입	7,473,638,000	7,473,638,000	46,783,277,600	11,009,420,490	30,964,022,38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8,099,265,000	8,099,265,000	14,410,840,000	7,293,849,880	7,116,878,720
지방교부세	13,971,100,000	13,971,100,000	15,124,575,800	15,124,575,800	
지방교부세	13,971,100,000	13,971,100,000	15,124,575,800	15,124,575,800	
조정교부금등	28,797,394,000	28,797,394,000	28,790,062,260	28,790,062,260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8,797,394,000	28,797,394,000	28,790,062,260	28,790,062,260	
보조금	197,398,903,000	197,398,903,000	194,247,998,770	194,247,998,770	
국고보조금등	106,390,530,000	106,390,530,000	104,941,418,850	104,941,418,850	
시·도비보조금등	91,008,373,000	91,008,373,000	89,306,579,920	89,306,579,9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810,548,000	92,363,949,333	93,326,598,897	93,326,598,897	
보전수입등	69,810,548,000	92,363,949,333	93,326,598,897	93,326,598,897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577,129,801,000	599,683,202,333	520,380,149,485	30,789,116,153	10,563,820,626	37,950,116,069
일반공공행정	76,978,545,000	81,019,429,083	67,855,372,250	5,997,308,873	698,249,679	6,468,498,281
입법및선거관리	1,581,419,000	1,581,419,000	1,175,237,080	42,060,000		364,121,920
지방행정·재정지원	913,141,000	913,141,000	724,419,120		8,758,000	179,963,880
일반행정	74,483,985,000	78,524,869,083	65,955,716,050	5,955,248,873	689,491,679	5,924,412,481
공공질서및안전	3,924,857,000	4,520,949,000	4,213,020,120	69,322,000	27,827,520	210,779,360
재난방재·민방위	3,924,857,000	4,520,949,000	4,213,020,120	69,322,000	27,827,520	210,779,360
교육	12,400,215,000	12,455,845,000	11,512,987,144	596,814,000	9,962,250	336,081,606
유아및초중등교육	11,681,642,000	11,737,272,000	11,253,564,651	146,814,000	4,653,430	332,239,919
평생·직업교육	718,573,000	718,573,000	259,422,493	450,000,000	5,308,820	3,841,687
문화및관광	24,844,929,000	29,400,916,100	25,056,277,266	1,896,962,540	268,575,210	2,179,101,084
문화예술	16,507,074,000	20,622,934,000	19,483,280,290	821,000,000	106,022,370	212,631,340
관광	1,186,813,000	1,471,601,400	1,279,869,820	134,053,600	1,797,360	55,880,620
체육	6,130,629,000	6,130,629,000	3,932,237,316	260,000,000	35,815,750	1,902,575,934
문화재	1,020,413,000	1,175,751,700	360,889,840	681,908,940	124,939,730	8,013,190
환경	42,552,603,000	42,852,761,680	35,366,515,264	2,301,229,680	177,318,850	5,007,697,886
상하수도·수질	6,079,002,000	6,079,002,000	4,957,072,350	1,000,000,000	26,082,420	95,847,230
폐기물	32,054,866,000	32,162,263,080	27,480,970,838		120,292,080	4,561,000,162
대기	1,578,290,000	1,771,051,600	1,066,051,420	500,000,000	27,508,630	177,491,550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환경보호일반	2,840,445,000	2,840,445,000	1,862,420,656	801,229,680	3,435,720	173,358,944
사회복지	216,734,897,000	218,528,074,020	199,539,939,337	4,304,627,000	6,886,895,965	7,796,611,718
기초생활보장	28,218,790,000	28,395,040,000	27,191,654,130		1,045,783,360	157,602,510
취약계층지원	32,410,850,000	32,717,163,000	30,140,247,993	572,564,190	894,122,099	1,110,228,718
보육·가족맞여성	65,718,213,000	66,520,327,020	56,779,395,664	1,493,643,750	3,743,809,676	4,503,477,930
노인·청소년	77,464,306,000	77,972,806,000	73,747,285,841	2,120,919,060	608,521,870	1,496,079,229
노동	9,705,811,000	9,705,811,000	8,917,859,519	117,500,000	594,658,960	75,792,521
보훈	1,498,970,000	1,498,970,000	1,380,072,410			118,897,590
사회복지일반	1,717,957,000	1,717,957,000	1,383,423,780			334,533,220
보건	17,011,291,000	17,587,014,150	13,996,500,051	1,245,954,100	1,175,449,912	1,169,110,087
보건의료	16,509,197,000	17,084,920,150	13,499,966,921	1,245,954,100	1,175,449,912	1,163,549,217
식품의약품안전	502,094,000	502,094,000	496,533,130			5,560,870
농림해양수산	474,449,000	474,449,000	449,471,440		10,499,660	14,477,900
농업·농촌	353,524,000	353,524,000	330,848,440		10,499,660	12,175,900
임업·산촌	120,925,000	120,925,000	118,623,000			2,302,000
산업·중소기업	26,037,554,000	32,410,667,000	21,474,572,884	9,424,607,230	702,523,520	808,963,366
산업진흥·고도화	24,920,711,000	30,666,415,000	19,851,219,075	9,424,607,230	617,774,580	772,814,115
에너지및자원개발	86,760,000	166,760,000	63,716,560		84,748,940	18,294,500
산업·중소기업 일반	1,030,083,000	1,577,492,000	1,559,637,249			17,854,751
교통및물류	8,527,914,000	11,432,843,300	9,739,377,962	1,289,738,480	5,211,280	398,515,578
도로	7,887,558,000	9,972,987,300	8,353,469,322	1,289,738,480	172,090	329,607,408
대중교통·물류등기타	640,356,000	1,459,856,000	1,385,908,640		5,039,190	68,908,170
국토및지역개발	15,828,792,000	18,620,747,000	13,551,977,802	3,624,752,250	185,890,010	1,258,126,938
지역및도시	15,828,792,000	18,620,747,000	13,551,977,802	3,624,752,250	185,890,010	1,258,126,938
예비비	1,900,856,000	466,608,000				466,608,000
예비비	1,900,856,000	466,608,000				466,608,000
기타	129,912,899,000	129,912,899,000	117,624,137,965	37,800,000	415,416,770	11,835,544,265
기타	129,912,899,000	129,912,899,000	117,624,137,965	37,800,000	415,416,770	11,835,544,265

다.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2,581,153,000	53,758,430,110	92,540,040,521	54,418,460,211	37,572,744,2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3,856,000	343,856,000	642,906,950	374,035,840	133,565,490
세외수입			299,051,550	30,180,440	133,565,490
경상적세외수입			2,447,770	2,447,770	
임시적세외수입			296,603,780	27,732,670	133,565,490
보조금	255,280,000	255,280,000	255,280,000	255,280,000	
국고보조금등	127,640,000	127,640,000	127,640,000	127,640,000	
시·도비보조금등	127,640,000	127,640,000	127,640,000	127,64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576,000	88,576,000	88,575,400	88,575,400	
보전수입등	88,576,000	88,576,000	88,575,400	88,575,400	
주차장특별회계	50,844,965,000	52,022,242,110	90,727,468,428	52,874,759,228	37,439,178,750
세외수입	14,505,019,000	14,505,019,000	53,210,245,040	15,357,535,840	37,439,178,750
경상적세외수입	6,849,947,000	6,849,947,000	6,930,238,420	6,930,238,420	
임시적세외수입	2,895,072,000	2,895,072,000	39,735,111,600	3,029,262,920	36,292,318,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60,000,000	4,760,000,000	6,544,895,020	5,398,034,500	1,146,860,520
지방교부세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지방교부세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조정교부금등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보조금	1,125,500,000	1,125,500,000	1,125,500,000	1,125,500,000	
국고보조금등	993,500,000	993,500,000	993,500,000	993,500,000	
시·도비보조금등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82,446,000	35,659,723,110	35,659,723,388	35,659,723,388	
보전수입등	34,482,446,000	35,659,723,110	35,659,723,388	35,659,723,388	
기반시설특별회계	1,392,332,000	1,392,332,000	1,169,665,143	1,169,665,143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20,792,000	20,792,000	20,896,740	20,896,740	
경상적세외수입	20,792,000	20,792,000	20,896,740	20,896,7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1,540,000	1,371,540,000	1,148,768,403	1,148,768,403	
보전수입등	1,148,768,000	1,148,768,000	1,148,768,403	1,148,768,403	
내부거래	222,772,000	222,772,000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52,581,153,000	53,758,430,110	16,371,064,397	1,303,130,980	255,766,560	35,828,468,17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3,856,000	343,856,000	339,096,340		4,759,060	600
사회복지	308,856,000	308,856,000	307,659,340		1,196,060	600
기초생활보장	308,856,000	308,856,000	307,659,340		1,196,060	600
기타	35,000,000	35,000,000	31,437,000		3,563,000	
기타	35,000,000	35,000,000	31,437,000		3,563,000	
주차장특별회계	50,844,965,000	52,022,242,110	14,869,630,337	1,303,130,980	251,007,500	35,598,473,293
수송및교통	46,788,562,000	47,965,839,110	11,661,408,617	1,303,130,980	251,007,500	34,750,292,013
대중교통·물류등기타	46,788,562,000	47,965,839,110	11,661,408,617	1,303,130,980	251,007,500	34,750,292,013
기타	4,056,403,000	4,056,403,000	3,208,221,720			848,181,280
기타	4,056,403,000	4,056,403,000	3,208,221,720			848,181,280
기반시설특별회계	1,392,332,000	1,392,332,000	1,162,337,720			229,994,280
일반공공행정	1,392,332,000	1,392,332,000	1,162,337,720			229,994,280
일반행정	1,392,332,000	1,392,332,000	1,162,337,720			229,994,280

3. 주민 부담 지방세액

지방세실수납액	인구	주민 1인당 부담 지방세액
189,086,997,090원	122,499명	1,543,580원

4. 지방채 등 채무관리 현황

- 가. 채무 현황 : 우리구 채무 없음
 나. 채무부담행위 : 우리구 채무부담행위 없음
 다. 채권 현황 : 용자금 등 26,345,129,590원

5. 기금운용 상황

(단위 : 원)

기금명	2020년말 조성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계	41,300,205,839	14,913,641,204	15,867,882,438	40,345,964,605
공용·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22,158,808,417	3,339,581,149	3,690,522,020	21,807,867,546
체육진흥기금	243,256,002	4,474,101	23,849,930	223,880,173
환경미화원자녀학자대여 기금	548,725,460	34,105,416	35,097,160	547,733,716
노인복지기금	2,024,403,406	44,420,430	9,416,840	2,059,406,996
양성평등기금	1,355,282,922	30,141,881	26,272,960	1,359,151,843
중소기업육성기금	4,843,349,879	7,545,544,104	8,919,707,738	3,469,186,245
식품진흥기금	1,762,081,343	271,623,357	215,146,090	1,818,558,610
재난관리기금	2,340,475,658	1,993,641,488	1,047,484,720	3,286,632,426
도로굴착복구기금	3,484,589,686	1,158,397,366	1,516,075,140	3,126,911,912
자활기금	980,376,122	144,346,343		1,124,722,465
옥외광고정비기금	1,558,856,944	347,365,569	384,309,840	1,521,912,673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046,689,220,285	4,150,840,603	21,562,139,431	2,029,277,921,457
행정 재산	계	2,044,973,823,200	3,468,216,689	21,212,298,288	2,027,229,741,601
	공 용 재 산	336,172,209,008	1,430,702,424	2,332,828,438	335,270,082,994
	공 공 용 재 산	1,708,801,614,192	2,037,514,265	18,879,469,850	1,691,959,658,607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재 산				
일 반 재 산		1,715,397,085	682,623,914	349,841,143	2,048,179,856

7.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수량/개, 금액/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소 계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기타	
수량	1,188	245	149	17	79	40	20	10	10	1,393
금액	11,882,012,792	1,942,554,057	1,339,317,553	104,150,784	499,065,720	1,286,454,148	857,235,253	37,339,980	391,878,915	12,538,112,701

8. 재무제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결과
2021년	2,368,731,635,221	30,041,078,371	2,338,690,556,850	505,220,057,748	525,907,118,388	20,687,060,640
2020년	2,386,105,106,523	27,813,834,838	2,358,291,271,685	528,302,861,116	560,066,132,380	31,763,271,264
증 감	-17,373,471,302	2,227,243,533	-19,600,714,835	-23,082,803,368	-34,159,013,992	-11,076,210,624

(2) 재정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I. 자산총계	2,368,731,635,221	100.00	2,386,105,106,523	100.00
유동자산	238,301,096,210	10.06	262,424,586,747	11.00
투자자산	22,669,967,658	0.96	22,808,851,584	0.96
일반유형자산	182,136,049,685	7.69	171,983,035,312	7.21
주민편의시설	478,692,427,637	20.21	490,207,197,672	20.54
사회기반시설	1,441,821,075,386	60.87	1,434,008,768,862	60.10
기타비유동자산	5,111,018,645	0.21	4,672,666,346	0.19
II. 부채총계	30,041,078,371	100.00	27,813,834,838	100.00
유동부채	12,136,737,791	40.40	13,167,401,957	47.34
기타비유동부채	17,904,340,580	59.60	14,646,432,881	52.66
III. 순자산총계 (I - II)	2,338,690,556,850	100.00	2,358,291,271,685	100.00

(3) 재정운영표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I. 비용총계	525,907,118,388	100.00	560,066,132,380	100
인건비	141,754,595,108	26.95	130,383,382,305	23.28
운영비	121,056,224,978	23.02	106,600,129,041	19.03
정부간이전비용	12,525,315,620	2.38	11,695,380,790	2.09
민간등이전비용	226,021,514,441	42.98	279,859,533,560	49.97
기타비용	24,549,468,241	4.67	31,527,706,684	5.63
II. 수익총계	505,220,057,748	100.00	528,302,861,116	100
자체조달수익	268,689,867,951	53.18	258,911,708,674	49.01
정부간이전수익	234,188,854,394	46.36	269,344,845,705	50.98
기타수익	2,341,335,403	0.46	46,306,737	0.01
III. 운영차액 (I - II)	20,687,060,640		31,763,271,264	

9. 성과보고서

(단위 :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125	225	50	118	56	536,751,213,882
감사담당관	1	1	2	0	1	1	85,027,037
생활안전담당관	1	3	8	1	3	4	4,513,019,604
시민친화국	1	13	20	3	9	8	93,015,167,714
생활복지친화국	1	16	28	5	18	5	204,927,766,409
생활도시친화국	1	13	25	3	17	4	19,829,311,572
경제친화국	1	8	15	7	6	2	32,038,426,183
행정지원국	1	8	23	2	15	6	137,537,672,453
보건소	1	7	21	3	6	12	25,094,701,848
구의회	1	1	2	0	2	0	2,899,910,420
등	1	55	81	26	41	14	16,810,210,642

10.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자산(C)	부채(D)	부채/ 자산 (D/C)
계=a+b-A	708,815,109,176	595,026,966,474	2,375,674,709,153	31,942,069,601	1.34 %
자치단체(a)	701,780,049,621	591,055,929,925	2,368,731,635,221	30,041,078,371	1.27 %
지방공공기관(b)	40,911,738,193	37,847,715,187	8,723,073,932	1,900,991,230	21.79 %
내부거래(A)	33,876,678,638	33,876,678,638	1,780,000,000		

※ 자치단체(a)=일반회계+특별회계(3)+기금(11)-회계기금간전출금
 지방공공기관(b)=중구시설관리공단+중구문화재단+인재육성장학재단
 내부거래(A)=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간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88호

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부 위촉직 위원 모집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에 따라 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부 위촉직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모집인원 : 7명

2. 모집분야 : 정비사업 관련분야(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등)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

- 정비사업 관련분야(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자
 - 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자
 - 다.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재직자
 - 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5.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 응모기간 : 2022.10.05.(수) ~ 2022.10.19.(수)
- 접 수 처 : 중구청 본관 6층 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 접수방법 : E-mail(junky526@seoul.go.kr) 및 방문접수 가능
 - 이메일(본인확인 필수),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6.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운로드 가능).
- 소속기관장 추천서(필요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응모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결과발표

- 자체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8.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중구 도심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3396-59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사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 .(남/여)	
	(영문)	응모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별지작성 가능”			
그 밖의 사항	“별지작성 가능”			
귀 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2. 10. . 지원자 : (서명)				
첨부 : 1. 재직증명서 등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추천서(필요시) 1부.				
중구청장 귀하				